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1443 무고, 무고교사
피 고 인	B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유용훈(기소), 노영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기혁(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 4. 10. 선고 2025고단6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2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원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항소가 제기되지 않음에 따라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이종 누범기간 중 피무고자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하는 무고 교사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으므로 그 형을 감경할 필요가 있는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배우자가 피무고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게 되자 충격감 등으로 피무고자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재판장 판사 오덕식 _____

 판사 김배현 _____

 판사 정현서 _____